

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2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3년 11월 6일
- 나. 제안자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- 라. 상정일자: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11. 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지역경제과장 주미정)

제안이유

강서유통단지 내 신규로 건립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효율적인 유지·관리 및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	개관예정
		규모(m ²)	수용인원	
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	국회대로7길 114 (화곡동 855-11)	299.93m ² (90.6평)	지하1층~지상5층	2023년 12월

- 위탁사무내용: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등
- 위탁기간: 계약일로부터 5년
- 수탁자 선정방식: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
- 소요예산: 해당없음
 - ※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상인조직에서 부담하여 별도의 예산지원 없음

나. 추진일정

- 2023년 8월: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개최
- 2023년 11월: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제출
- 2023년 12월: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의 2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4조, 제13조
-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 제20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- 본 동의안은 강서유통단지 내 건립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시장 상인조합¹⁾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

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

- 고객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²⁾에 따라 상인조직에게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
- 이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(2023. 8. 8.)를 통하여 위탁 운영 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 ‘적정’ 심의 완료하였으며,
- 해당 운영 사무는 지역 여건과 유통단지 내 특성을 경험으로 체득 하고 있고, 별도의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 없는 지역 상인 조직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
-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, 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후 지도·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1) 강서유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(대표: 이종만)

2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)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상인조직등”이라 한다)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
1. 상인조직
2.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3. 시장관리자

■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내부시설 현황 ■

층 구분	면적	시설내역	비고
계	299.93m ²		
지하 1층	56.95m ²	대회의실(다목적실)	
지상 1층	50.80m ²	상품전시실, 고객쉼터	
지상 2층	59.20m ²	헬스케어실	
지상 3층	59.20m ²	소회의실, 바이어상담실	
지상 4층	59.20m ²	상인회 사무실	
지상 5층	14.58m ²	계단실 및 창고	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4. 교통,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)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(이하 “시장관리자”라 한다)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·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상인조직등”이라 한다)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상인조직
2.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
3. 시장관리자

제13조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)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한 차례에 한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

제20조(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) ① 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(공동판매장, 고객지원센터, 공동물류창고, 태양광발전 등)의 운영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수입과 지출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.